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4

발의연월일 : 2017년 8월 9일

발 의 자 : 문영민, 김제리, 김경자(양천),
이순자, 김용석(서초), 장홍순,
성백진, 유광상, 김인호,
황준환, 김용석(도봉) 의원(11명)

1. 제안이유

- 현행 건립비용 1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준공석, 준공판 등을 통해 건립비용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개별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표지판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공개토록 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법령규정의 체계성을 갖추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 시민들에게 관련 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 방법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
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
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
으로 건립한 어린·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2. 50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⑤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4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① 서울특별시장은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물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공공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개대상 공공시설물(제3조제4항 관련)

구 분	시 설 물
1. 도로 · 인도	·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보안등 · 벤치, 미디어폴 · 자전거 보관대
2. 교통	· 주 · 정차 단속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3. 공원 · 하천	· 공원 안내표지판 · 벤치,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물 · 미술작품, 조형물 · 체육시설물(테니스장, 축구장, 운동기구 등) · 하천시설물
4. 청소 · 위생	· 가로휴지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5. 기타	· 그 밖의 공공시설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서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설치한다’ 고 함에 따라 비용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개대상 공공시설물의 설치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파악이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박수진

☎ 02-3705-1286

e-mail : park1002@seoul.go.kr